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은 수입신고 면제대상으로 규정함(안 제8조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생용품의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여 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 수입 신고되는 위생용품의 검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6항).
-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에 대해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2제1항).

II. 검토의견

- 개정안 제8조제2항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제3항은 검사를 실

시한 후 검사 결과 확인 전이라도 조건부로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고 수리 시점과 절차가 불명확함.

- 현행법상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¹⁾에는 수입 신고서류에 대한 형식적 검토와 물리적·화학적 방법 등에 의한 실질적 검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검사 결과에 따른 신고 수리로 일원화하여 중복 규정을 조정하고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와 신고 수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8조(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및 검사) <u><신 설></u>	제8조(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및 검사) ② <u>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필요하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u>	제8조(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및 검사) ② (현행 제2항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생용품에 대하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생용품에 대하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적합하면 신고를 수

1)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및 검사)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생용품의 수입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별표 3]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방법(제13조 관련) : 별표3은 검사의 종류를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로 분류하고, 대상, 검사방법 및 검사업무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여 통관 절차가 끝나 기 전에 관계 공무원 이나 검사기관으로 하 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여 통관 절차가 끝나 기 전에 관계 공무원 이나 검사기관으로 하 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u>이 경우 검사 결과의 확 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 고를 수리할 수 있다.</u>	<u>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 요한 경우에는 검사 결 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 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 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 다.</u>

(전문위원 박 혜 진)